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3호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산업디자인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1)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 연구개발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토록 함.

(2) 대전광역시장이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1) 대전광역시장이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2) 대전광역시장이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지명과 작가 자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1)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초대작가로 지명하고, 공모전에 특선한 사람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 (2)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개발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산업디자인 공모전)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산업디자인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초대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초대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추천작가) 시장은 제4조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모전에 특선한 사람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및 운영)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2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전문개정 2009.5.21.]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